

2020학년도
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(안)



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

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

차 례

| | |
|--|----------|
| I. 총 칙 | 1 |
| 1.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및 시행 | 1 |
| 2.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방향 | 4 |
| 3.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| 7 |
| 4. 대학입학 표준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| 7 |
| II.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| 8 |
| 1. 전형별 운영기준 | 8 |
| 가. 일반전형 | 8 |
| 나. 특별전형 | 8 |
| 다. 특별전형 종류에 따른 세부사항 | 10 |
| 2. 전형요소 | 18 |
| 가. 학교생활기록부 | 18 |
| 나. 대학수학능력시험 | 19 |
| 다. 기타 비교과형 요소 등 | 20 |
| 3. 전형방법 | 21 |
| 가. 직업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전형방법 활성화 | 21 |
| 나. 전형방법의 연구 개발 | 22 |
| 다. 전형방법 간소화 | 22 |
| 라. 수시 입학전형의 수능반영 지양 권고 | 23 |
| 마. 학생부 종합전형 | 23 |
| 4. 모집 지원 합격 및 등록 | 24 |
| 가. 학생모집 | 24 |

| | |
|---|-----------|
| 나. 전문대학 지원방법 | 25 |
| 다. 합격자 발표 | 25 |
| 라. 신입생 등록 | 26 |
| 마. 대입지원방법위반자에 대한 조치 | 27 |
| 5. 전문대학 입학전형 표준 등 | 28 |
| 가. 전형체제 표준 | 28 |
| 나. 입학정보 표준화 및 용어정비 등 | 29 |
| Ⅲ.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일정 | 30 |
| 가. 공통사항 | 30 |
| 나.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일정 | 30 |
| Ⅳ. 행정사항 | 33 |
| 가.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 | 33 |
| 나. 지원 등록 현황 제출 | 33 |
| 다. 지원방법 위반자 관련사항 | 33 |
| 라. 등록금 환불 관련사항 | 35 |
| 마. 입학전형료 | 35 |
| 바. 사전 예고제 강화 | 36 |
| 사. 선행학습 영향평가 | 36 |
| 아. 기 타 | 37 |
| 【붙임 1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현황(2017.08월 현재 기준) | 38 |
| 【붙임 2】 2020학년도 일반대학 입학전형 일정 | 39 |
| 【붙임 3】 정원 외 특별전형 참고자료 | 40 |

I. 총 칙

1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및 시행

가. 수립근거 : 고등교육법 제34조의5

제34조의5(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)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(이하 "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"이라 한다)을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(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)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③ ~ ④ (생략)

나. 기본사항의 수립·공표

- “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”(이하 ‘협의회’)는 「고등교육법」에 근거하여 “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”(이하 ‘위원회’)의 협의·조정을 통해 “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”(이하 ‘기본사항’)을 수립·공표함.

■■■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■■■

- 전문대학 입학전형에 대해 자율성과 통일성을 기반으로 각 대학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 정관 및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총장, 시도교육감, 고등학교장, 학부모 등으로 구성·운영되는 심의 기구 (협의회 정관 제23조의2)

다. 기본사항의 적용

- 전문대학(이하 ‘대학’)은 위원회가 수립·공표한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매 학년도 “입학전형 시행계획”(이하 ‘시행계획’)을 수립하고, 협의회에 제출함.
- ☞ **기본사항의 준수 의무** :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2항에 의거,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·공표함에 있어 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.

- 시행계획에는 모집시기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포함하며, 필요시 위원회는 대학별 시행계획에 대해 협의·조정을 실시함.
 - ※ 시행계획 제출 시에는 자체적으로 계획(중장기 전망과 자체 발전전략을 고려한 내부계획)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각 전형별로 명확히 보고하되, 인원 제한이 없는 정원 외 전형의 경우,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“미 지정” 형태로 보고할 수 있음
- 대학은 모집시기별 모집요강 수립 시에도 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하며, 필요시 위원회는 대학별 모집요강에 대해서도 협의·조정을 실시함.
- 시행계획에 대해 위원회의 수정 및 조정권고 등 통보가 있을 시 대학은 이를 적극 반영 함.
- 대학은 기본사항에서 정한 주요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그 처리기준과 운영 방침을 준수해야 하며, 특히, 입학정보 제공과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.
- 이 기본사항 적용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“전문대학”에 한함.

라. 기본사항 미 준수에 따른 제재

- 대학이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1조의2 [별표]에 따라 “학생정원 감축”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
- 전문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“전문대학윤리위원회”에서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(협의회 정관 제23조의 3), 협의회 이사회에 징계 등의 필요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(전문대학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).

마.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변경

- 대학은 위원회가 정한 기본사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·공표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며, 해당 내용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.
 - 단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에 의거, 관계법령의 제정·개정·폐지가 있는 경우,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,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,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

변경이 있는 경우, 다른 법령에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,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함.

- 시행계획은 법령에 따라 공표한 이후의 시점부터 해당 학년도 입학전형(학생 모집) 시작 일 이전까지 사유 발생 시 승인요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,
 - 단, 정부 및 협의회의 조치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사항이 아닌 경우, 자체적으로 결정(학과 개편 및 구조조정 등)하여 변경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은 입학년도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함.

※ 모집요강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6월말까지 완료 및 공개

- 시행계획 변경·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 등은 협의회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안내

바. 전문대학 입학전형 정보의 제공

- 협의회는 대학별 시행계획과 모집시기별 주요사항을 수합하여 국민들에게 전문대학 입학정보를 제공하며, 대학은 이를 위한 협의회의 자료제출 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함.
- 대학은 기본사항에서 제시한 정보 및 협의회 제출자료 외에도 수험생 진학준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용한 정보(전년도 입시결과 등)를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권장함.

가. 학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부담 완화

- 각 대학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, 초·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함.
- 초·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35조 제1항에 따른 대학별 고사는 초·중등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와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.
- 초·중등교육 정상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, 고교 등급제,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.

나. 입학전형 간소화 추진

- 학생·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완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입학전형을 핵심요소 위주로 간소하게 하며, **전형방법(전형유형 수, 성적반영방법 등)을 유형화**

다. 수시모집 비중 확대 및 모집시기별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 운영

- 직업 전망과 학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전문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수시 모집 비중 확대 필요
- 학교생활부 및 면접, 서류, 실기 중심의 전형을 확대하여 수능성적위주의 획일적 선발보다는 소질과 적성, 인성을 중시하는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학생선발 기회 확대
- 수능 및 학생부 교과성적 등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정시모집으로 운영 권장

라.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입학전형 확대

- 직업교육의 특성과 학생의 재능과 열정을 살릴 수 있도록 학업 성적이외에 취업역량에 필요한 소질과 적성, 인성을 높게 평가하는 전형방법을 적극 활용.
- 농어촌 출신 학생, 저소득층 학생,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, 그 외 사회·지역 배려자를 대상으로 한 '고른기회 전형'을 적극 권장
- 입학단계부터 현장중심의 맞춤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산업체 수요를 고려한 입학전형 확대 운영
 -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기반의 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됨에 따라 입학 단계에서부터 산업체 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직업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입학전형 활성화
- 산업체 협약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일자리 걱정 없이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'연계교육'을 적극 모색

마. 재직자의 향상교육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입학전형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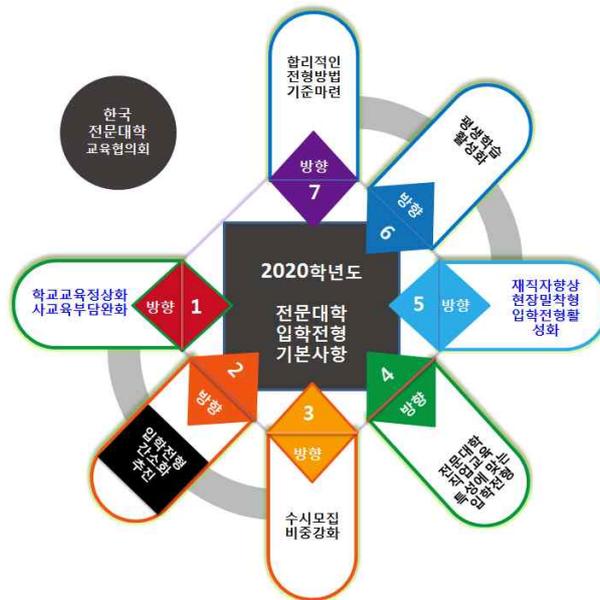
- 일·학습 병행을 통한 향상교육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,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에 전문대학이 견인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자 및 재직자 등 계속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밀착형 입학전형 활성화
-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한 학생들이 원하는 시기에 어려움 없이 직업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진학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활성화

바.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인 대상의 입학전형 확대

- 경력단절 여성, 퇴직자·은퇴자,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 등 제2의 경력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 확대 운영
 - 만학도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정원내/외 특별전형을 비롯하여 비학위 과정(특별과정, 시간제 등록생 등)을 활성화하여 평생직업교육시대를 전문대학이 선도

사. 합리적인 전형방법 및 기준 마련

- 모집단위별로 전공특성에 대한 요구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, 사전에 합리적인 선발절차, 전형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며,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시행계획에 명확히 하도록 함.



3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

-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,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강구함.
 - ※ 대학은 부정방지 대책 및 입시 윤리규정 등을 포함한 “공정성 확보방안”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·운영
-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, 해당 전형의 취지와 운영목적에 맞게 학생을 선발 하도록 함.
- 입학전형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내 「입학전형관리위원회」 및 「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」 등을 구성·운영함.

4 대학입학 표준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

- 각 대학은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원서를 사용하여 원서를 접수하는 것을 권장함. 협의회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원서를 마련함.
-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 점검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 관리 사항 점검을 위해 DB 작동기록, 보안장비 운영기록, 웹서버 운영기록 등 주요 로그를 일정기간 보관 협조 함
 - 원서접수를 외부 기관에서 대행처리 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점검체계를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, 대학 자체 점검 및 외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
-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'정보통신망 안정성 인증', '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'을 획득한 기관에서 원서접수가 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
- 대학은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유출 및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 함.

II.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

1 전형별 운영기준

가. 일반전형

□ 전형원칙

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
제34조제1항

-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함.
- 적법성·타당성·신뢰성·공정성·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·지원 자격·평가기준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함.
-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(종교, 성별, 재산, 장애여부, 연령 등)에 의해 자격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 할 수 없음.

□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

- 모집단위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함.
 - 실제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을 학칙과 동일하게 설정

나. 특별전형

□ 전형원칙

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
제34조제2항

- 전문대학 설립 목적과 직업교육 특성에 따라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
- 전문대학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원칙 적용
-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과

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

- 전문대학이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직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함.

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

- 직업교육의 특성을 적극 고려한 입시제도 확대 노력

□ 특별전형의 종류

- 정원 내 특별전형 (대학 자체 특별전형) : 입학정원 내에서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, 대학이 자체적인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특별전형
- 정원 외 특별전형 (법령으로 정한 특별전형) : 대졸자, 기회균형선발대상자, 각종 지체 또는 장애인, 외국인,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발하는 특별전형

【특별전형 종류에 따른 구분】

| 구분 | 전형명 | | | |
|--|-----------|--|---|--|
| 정원 내 특별전형 | 대학 자체기준 | 고교 유형별 대상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일반과정 졸업자 (일반고졸업자 등) ▸ 전문(직업)과정 졸업자 (특성화고졸업자 등) ▸ 연계교육 대상자 (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대상자 등) | |
| | | 경력자 및 특기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관련 경력자 (재직자 및 후진학 근로자 등) ▸ 특기자 (기술·기능대회 입상자, 어학, 예체능 등) | |
| | | 추천자 및 사회·지역배려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추천자 (학교장, 자치단체장 등) ▸ 사회·지역배려 대상자 (고른기회 대상자 등) | |
| | 정원 외 특별전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산업체 위탁교육(1호) ▸ 장애인 등 대상자(4호) ▸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(2호, 6호, 7호) ▸ 전문대학·대학 졸업자(8호) ▸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(12호) | | |
| | | 기회균형 선발 (14호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농어촌 출신자(가목) 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라목), 한부모가족 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(다목) | |
| | | | ▸ 「서해 5도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서해5도 출신자 | |
| ▸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등에 따른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| | | | |

* 정원 외 특별전형 중 () 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각 호(목) 임.

□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

- 정원내 특별전형 :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
- 정원외 특별전형 : 모집인원 산정기준 및 범위는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제2항에 따름

다. 특별전형 종류에 따른 세부사항

□ 정원 내 특별전형 **대학 자체 특별전형**

<전형기준 설정>

-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해 선발
- 지원자격 및 대상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, 직업교육의 진흥과 전문대학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

<고교유형별 대상자 특별전형>

- **(일반과정 /전문과정 졸업자 특별전형)** 일반과정 출신자 및 전문(직업)과정 출신자 간 입학사정(평가)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고교 유형을 분리하여 자격기준 부여 가능
- **(연계교육 대상자 특별전형)** 정부사업에 따른 연계교육 대상자, 특성화고-전문대학 간 연계교육 대상자 등 관련 협약 등에 따라 우선 선발 가능하며, “연계교육 특별전형”으로 분리 운영 권장

<경력자 및 특기자 특별전형>

- **(경력자 특별전형)** 재직자, 취업자(학습근로자 등 포함), 산업체 근무 및 사회단체 활동 경력, 전공 관련 기능보유자, 창업자, 기타 산업체 현장과의 연계경력 등 각종 경력 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
- **(특기자)** 특별한 기술과 기능, 각종 실적, 어학능력 및 예·체능 특기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며, 특기자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방법으로 운영
- “체육특기자 특별전형”은 지원자격 또는 전형요소에 체육 관련 경기/대회 참여 경력이나 자격·성적·입(수)상실적을 요구/활용하는 전형을 의미하며,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해야 함.

| 분야 | 전형 방법 |
|-----------|--|
| 체육 특기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체육특기자 전형요소에 학생부 교과성적, 출석 반영 의무화 ■ 모집요강에 단체종목 포지션별 모집인원 및 개인종목 종목별 모집인원 명시 의무화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실적평가 시 정량적 평가기준 사전 마련 및 모집요강에 상세 공개 |
| 특별 전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실기(면접)평가 시 3인 이상 참여, 1/3 이상 외부위원(타 대학 교수) 참여, 타학과교수 또는 입학사정관의 평가 참여 또는 공정성 위원 참여 의무화 |

<사회·지역배려대상자 특별전형>

- (사회·지역배려자) 사회·지역배려자 등이 고등직업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정원내 특별전형에서도 “사회·지역배려 대상자 전형”(고른 기회 전형) 활성화 권장
 - ※ 전문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농어촌 학생, 저소득층 학생,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등 ‘정원외 특별전형’ 뿐만 아니라, ‘정원내 특별전형’에서도 ‘사회·지역배려자’를 대상으로 한 “고른기회 전형”을 지속 확대 권장.
 - “사회·지역배려 대상자 전형”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전형으로 분리 운영하거나, 기존 대학 자체기준 특별전형 내 ‘고른기회’에 부합하는 자격기준을 추가·신설하여 운영
 - ※ “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”는 정원내전형(고른기회전형 등)에 포함하여 선발 가능함. “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”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과정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 ‘북한이탈주민’에 해당하지 않으며,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출생 자녀 또는 국내입국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(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)
 - “사회·지역배려 대상자 전형”에는 재난 및 재해로 인한 피해학생의 진학 지원을 위하여 국가재난 및 특별재해 지역 등의 피해학교 출신자 배려 권장
 -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(지)청장이 발급하는 「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」로 자격여부 확인 가능
- (지역인재 선발) 지역별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 있게 선발하는 “지역인재 전형”을 실시 할 수 있음
 - “지역인재 전형”은 “사회·지역배려 대상자 전형”으로 통합운영하고, 지역범위는 아래 표와 같이 해당 대학 소재 권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며, 선발방법 등은 대학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
 - ※ 운영학과 및 인원(선발비율) 등에 대해서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
 - “지역인재 전형”은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 전문대학에서 활성화

- 지원자격 설정 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
 - * 특정 지역 고교, 협정 체결 및 자매결연고교 만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음
 - * 고교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
 - * 졸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지원자격을 설정할 수 없음

【해당 지역의 범위 *】

| 해당지역(권역) | 범위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충청권 | 충청북도, 충청남도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|
| 호남권 |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|
| 대구·경북권 | 경상북도, 대구광역시 |
| 부산·울산·경남권 | 경상남도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|
| 강원권 | 강원도 |
| 제주권 | 제주특별자치도 |

*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

<정원내 특별전형 통합 및 간소화>

- 전문대학의 활성화 되지 않은 전형은 축소·폐지 또는 통합
 - 종전까지 각 대학이 자율로 다양하게 운영하던 전형을 최대 7개 통합기준 (“정원내 특별전형 통합기준(안)” 참조)으로 간소화 할 것을 권장

【정원내 특별전형 통합기준(안)】



※ 각 대학의 전형별 모집인원 설정방법에 맞추어 통합1~통합4 중, 대학이 선택 적용(교차 선택 가능) 하되, 최대 7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.

☞ 적용예 : ① 중전 (특별전형, 독자기준) → 변경 (대학 자체기준)

② 중전 (전문계고, 자격증, 취업자, 추천자, 독자기준) → 변경 (전문과정 졸업자, 대학 자체기준)

※ 각 명칭은 수험생·학부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적의명칭으로 수정될 수 있음

【참고 : 전형 통합에 따른 세부기준(안)】

| 통합기준 | 세부기준(범위) |
|-----------------|--|
| 1. 일반과정 졸업자 | 일반고 졸업자 등 |
| 2. 전문(직업)과정 졸업자 | 특성화고 졸업자 등 |
| 3. 연계교육 대상자 | 정부사업에 따른 연계교육 대상자, 고교-전문대학 간 연계교육 대상자, 기타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대상자 등 |
| 4. 관련경력자 | 재직자 및 취업자(학습근로자 등 포함), 산업체 근무, 방송활동경력, 사회단체 활동경력, 전공 관련 기능보유자, 전공 관련 업체종사자, 벤처창업자 등 |
| 5. 특기자 | 기술·기능대회입상자, 자격증소지자, 어학능력우수자, 예·체능특기자 등 |
| 6. 추천자 | 교장·교사추천자,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, 산업체장 추천자 등 |
| 7. 사회·지역배려 대상자 | 농어촌 출신자,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, 장애인, 벽오지 / 도서벽지자녀, 각종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, 대안학교출신자, 다자녀, 다문화자녀, 실직자자녀, 만학도 및 주부, 국가재난 및 특별재해지역 출신자, 지역인재 전형,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|

<기타 충원방법 등>

- 모집단위별 특별전형 등록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인원은 일반전형으로 모집인원을 이월하여 일반전형 지원자로 충원하며, 모집단위별 일반전형 등록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부족인원은 특별전형으로 모집인원을 이월하여 특별전형 지원자로 충원 가능

□ 정원 외 특별전형 (법령으로 정한 특별전형)

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

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단, 유아교육과의 경우 정원 외 총 모집인원은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.

▣ 운영원칙

- 전형 취지에 적합하게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'전형 취지 부합도'를 전형 요소 또는 평가 지표에 반영 권장
-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예고를 강화함
- 정원 외 특별전형 관련 부정 입학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모집 요강 등에 명시 함

<전문대학·대학 졸업자 전형>

- 자격기준 : 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기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모집인원 : 제한 없음 (단, 간호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%이내, 보건계열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%이내에서 모집 가능)

【학력인정 기준 :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】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.
1. 대학(산업대학·교육대학,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.)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
 2.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·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<기회균형선발제 >

-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·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, 아래의 범위 내 모집가능 (총 입학정원의 최대 11%)
 - ▶ **(가목 : 농어촌출신자)** 학교장이 정하는 농·어촌 출신자 (모집단위별 10%이내, 총 입학정원의 4%이내)
 - ※ 농어촌 출신자의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학교 소재지·재학기간·학생 거주지·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대학별 「입학전형관리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
 - ▶ **(다목 :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)**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에서 정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(농어촌 출신자(가목) 및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(라목) 포함 총 입학정원의 최대 11% 이내, 보건·의료 및 교원양성 관련 학과 모집금지)
 - ▶ **(라목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)**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(모집단위별 20%이내, 농어촌 출신자(가목)를 포함하여 총 입학정원의 5.5% 이내),

【기회균형선발제 전형 모집인원 (총 입학정원 기준)】

| 농어촌출신자 |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|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4% 이내 | - | - |
| 5.5% 이내 | | - |
| 11% 이내 | | |

<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한 특별교육 대상자 전형>

영 제29조 제2항 제4호

- 자격기준 :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대학별 「입학전형관리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
- 모집인원 : 제한 없음

<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>

영 제29조 제2항 제2호, 제6호, 제7호

- 재외국민 및 외국인,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아래의 같이 모집가능
 - ▶ (2호 : 재외국민 및 외국인) 총 입학정원의 2%이내(모집단위별 10%이내) ※6호, 7호제외
 - ▶ (6호 :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) 모집인원 제한 없음.
 - ▶ (7호 :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전부 이수한 다음의 사람)
 - * 재외국민 : 모집인원 제한 없음.
 - * 외국인 : 모집인원 제한 없음.
 - * 「국적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(결혼이주민) : 모집인원 제한 없음.
- ※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자의 모집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 가능 (9월 입학 가능)

글로벌 환경에 대비한 특별전형 활성화 권장

- 전문대학 육성방안과 연계하여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고등직업교육 개발·확산을 통해 우수한 외국 유학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입학전형 모색

<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>

영 제29조 제2항 제12호

- 자격기준 : 전문대학(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.)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
- 모집인원 : 총 입학정원의 5%이내 (단, 간호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% 이내, 보건계열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% 이내에서 모집)

□ **성인학습자의 평생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전형 활성화 권장**

- 재직자·중도퇴직자 등이 재취업·창업을 위한 최신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성인중심의 입학전형 활성화 권장
 - 성인학습자(만학도)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입학전형 개발 등
- ※ 산업기술 고도화와 다양한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평생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평생직업교육프로그램 마련

<서해5도 교육과정 이수자>

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
제11조

- 자격기준 : 서해 5도에서 「민법」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또는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- 모집인원 : 모집단위별 5% 이내, 총 입학정원의 1% 이내

<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>

제주특별법 제211조 및 218조

- 자격기준 : 제주특별법 제211조 및 제2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련 조례 제20조 4항 및 5항 (학생정원 등)에 따른 다음 ①~②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지원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부, 모, 본인 모두)
 - ① 「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(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) 구성원
 - ② 「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」 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
- 모집인원 : 모집단위별 10% 이내, 총 입학정원의 10% 이내

<산업체위탁교육>

영 제53조의2 및 제29조 제2항
제1호

-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은 교육부의 「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」 및 세부시행계획에 의거, 대상대학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

참고 : 전문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기준 [2017.8월 현재]

| 조항 | 전형명 | 대상자 | 총 입학정원 대비 |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| | |
|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| | | 보건계열* | 간호 | 그외학과 |
| 2호 | 재외국민 및 외국인 | 재외국민 및 외국인 (제6.7호 대상자 제외) | 2%이내 | 10%이내 | | |
| 6호 | |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| 제한기준 없음 | 제한기준 없음 | | |
| 7호 | |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, 결혼이주민 | 제한기준 없음 | 제한기준 없음 | | |
| 4호 | 특수교육대상자 |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| 제한기준 없음 | 제한기준 없음 | | |
| 8호 | 전문대학·대학 졸업자 | 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 제한기준 없음 | 10%이내 | 30%이내 | 제한기준 없음 |
| 12호 |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<small>* 수도권 모집금지 * 25세 입학, 산업체 근무 2년이상</small> | 전문대학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 제외)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| 5%이내 | 5%이내 | | 제한기준 없음 |
| 14호 | 가 라 다 기회균형 선발 <small>* 총 정원의 11%이내</small> |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의 학생 | 4%이내 | 10%이내 | | |
| | |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| 5.5%이내 (농어촌 포함한 최대 5.5%이내) | 20%이내 | | |
| | |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자 중 3년이상 재직자 | 11%이내 (농어촌 및 기초생활을 포함한 최대 11%이내) | 보건의료계열 모집금지 (유아교육과 포함) | 제한기준 없음 | |
| 1호 | 기타 정원 외 전형 | 산업체 위탁학생, 기타 위탁학생 | 교육부 장관이 정함 (별도 지침에 의거 운영) | | | |
| 13호 | |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 | 20%이내 | 교육부 장관이 정함 (별도 지침에 의거 운영) | | |
| 서해 5도 법 | | 서해5도 교육과정 이수자 (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) | 1%이내 | 5%이내 | | |
| 제주 특별법 | |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(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) | 10%이내 | 10%이내 | | |

* 전문대학의 9대 보건계열 중 간호(학)과를 제외한 "8개 보건관련 학과"임 임.
(물리치료, 방사선, 안경광학, 응급구조, 임상병리, 작업치료, 치기공, 치위생)

【전형요소의 구분】

□ 전문대학의 전형요소는 크게 “교과형”과 “비교과형” 요소로 구분함.

- 세부 중심요소는, 학생부(교과/비교과), 수능, 면접, 실기, 서류 등을 중심으로 활용함.

☞ (교과형) : “학생부(교과)” 및 “수능”을 중심으로 평가

☞ (비교과형) : 학생의 취업의지, 소질과 적성, 인성 등을 평가하는 “면접”*, 전공 연계 실기 수준 등을 평가하는 “실기”, 기타 관심과 재능 등을 평가하는 “서류”** 및 “학생부(비교과)” 등으로 교과영역과 차별되는 비교과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

* 면접 :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의 소질과 적성, 인성, 취업의지 등을 중점 평가하는 것으로, 산업체의 채용방식과 직업교육의 특성을 반영

** 서류 : 자기소개서, 수학 및 학업계획서, 추천서, 전공연계 자격, 기타 개인의 업적.특기.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중심으로 동기와 관심, 재능에 대해 정성적인 평가를 위한 서류를 의미 (수학.과학.영어.논술 경시대회 수상 등 각종 교과위주의 스펙 관련 서류와 구별됨.)

가. 학교생활기록부 (초·중등교육법 제25조)

□ 작성 기준일

- 수시모집 지원자 : 2019. 8. 31(토) (교과, 비교과)
- 정시모집 지원자 : 2019. 11. 30(토) (교과, 비교과)
- 수시 및 정시모집 지원자 중 고등학교 졸업자 : 졸업일 기준

□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데이터 제공

- 제공시기 (예정)
 - 수시모집 : 추후 확인
 - 정시모집 : 추후 확인
- 제공방법 :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공
- 제공대상 : 2015. 2월 졸업자 ~ 2020. 2월 졸업(예정)자
- 제공기관 : 한국교육학술정보원(KERIS)
- ※ 제공대상, 자료 제공일 등은 정부의 운영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
□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활용

- 평가를 위한 반영비율 및 반영여부 등은 전공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결정
- ※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또는 전산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자 등은 비교과형 요소를 활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개발·활용
- 학생부 교과성적, 교과 발달사항, 비교과 활동사항(예술 및 체육활동 등 포함) 등을 대학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평가함.
- 검정고시출신 지원자의 대입전형자료도 온라인으로 제공함.

나. 대학수학능력시험

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

□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및 성적 통지일

- 시험 일 : 추후 확인
- 성적통지일 : 추후 확인

□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데이터 제공

- 제공기간 : 추후 확인 ~ 2020학년도 대입 전형 마감일
- 제공방법 : 온라인 제공
- 제공기관 : 한국교육과정평가원
- 제공자료
 - 한국사, 영어 :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표기
 - 한국사 및 영어 이외 영역(과목) : 영역별 표준점수, 백분위점수, 등급

【한국사 및 영어 영역의 등급 분할 원점수】

| 등급 | 과목 | 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분할 기준 (원점수) | 한국사 | 50~40 | 39~35 | 34~30 | 29~25 | 24~20 | 19~15 | 14~10 | 9~5 | 4~0 |
| | 영어 | 100~90 | 89~80 | 79~70 | 69~60 | 59~50 | 49~40 | 39~30 | 29~20 | 19~0 |

【한국사 및 영어 이외 영역(과목)의 등급별 기준 비율】

| 등급 | 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
|--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
| 기준비율 | 4% | 7% | 12% | 17% | 20% | 17% | 12% | 7% | 4% |
| 누적비율 | 4% | 11% | 23% | 40% | 60% | 77% | 89% | 96% | 100% |

□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활용

- 교과형 전형요소로 활용
- 수시모집에서 수능 점수를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, 등급으로만 반영 원칙

□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

- 성적통보 이후 부정행위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
 - 대학은 부정행위자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대상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여 학칙에 따라 처리
- ※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한 바에 따름.

□ 대학수학능력시험 “한국사” 과목 활용

- 2017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“한국사”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, 대학은 입학전형 시 “한국사” 과목을 활용할 수 있음.
- 한국사의 필수과목 도입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사 적극 활용 및 반영 권장
- “한국사” 과목을 전형요소로 활용함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학과 특성 및 전형취지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

□ 대학수학능력시험 ‘영어 절대평가’ 도입 관련

-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운영방안이 발표된 이후 별도 안내
- 2018학년도 대입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절대평가라는 고유의 특징을 고려하여 도입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활용방안 적극 모색

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세부 행정사항(성적 통지일, 성적 제공 일시, 성적자료 제공 등)은 “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” 발표에 따름

다. 기타 비교과형 요소 등

- 직업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 성적이외에 취업역량에 필요한 다양한 비교과형 요소를 활용할 수 있음.
- 학생부 기록사항(비교과 활동 등)을 잘 활용·선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학교생활중심의 학생 선발 강화 적극 노력

-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비교과형 요소를 적극 활용하되, 전공특성에 따라 대학의 장이 별도의 전형요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5조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요소 및 고사*를 선택하여 활용 할 수 있음.

* 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”(’14.3.11제정, ’14.9.12시행) 제10조에 의거, 대학별 고사(논술 등 필답고사, 면접·구술고사, 신체검사, 실기·실험고사 및 교직적성·인성검사 등)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아니함.

3 전형방법 (평가방법)

▶ 기본원칙

- 모집단위별 평가원칙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의 전형방법은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하되,
- 국가 입시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입시부담을 완화하며, 직업교육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을 적극 권장함.

가. 직업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전형방법 활성화

- 학생선발을 위해 대부분 활용되던 수능·내신 중심의 교과전형에서 학생의 의지와 가능성, 인성 등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비교과형 중심의 정성적인 평가방법 활성화
 - 종전의 시험성적 중심의 획일적 선발에서 벗어나, 취업역량에 필요한 소질·적성·인성 등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요소를 중시하여 학생의 재능과 열정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전형방법 적극 활용
- 전문대학 교육내용이 산업체에서 구축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, 입학단계에서부터 이와 연계하여 산업체 요구에 맞는 “맞춤형 전형” 활성화
 - 입시단계에서 산업체 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직업적성을 중시하고,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취업과 연계시켜 선발하는 ‘비교과 입학전형’* 활성화

* 전문대학 비교과 입학전형

- 학생 선발 평가에 산업체 인사 참여
- 비교과 요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학생의 취업의지, 재능과 열정, 소질과 적성 등을 심층 평가

나. 전형방법의 연구·개발

- 각 대학은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고 직업교육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방법과 기준을 개발하며, 고등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서 역할과 비전에 부응할 수 있는 선도적 입학전형 개발에 중점 노력
-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기 위해 정성적인 평가방법을 확대함에 따라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요소별 평가방법은 계량화 전략을 추구하며, 대학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·개발

다. 전형방법 간소화

- 전공 특성에 따라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을 신중히 결정하되, 학생·학부모가 전형기준을 쉽게 알고 입시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전형요소의 활용은 2가지 이내로 간소화하며, 주된 전형요소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시행
- 교과위주 전형의 경우 수시는 학생부, 정시는 수능을 중심으로 활용 권장
- 대입전형 간소화의 일환으로 대학별로 설정·활용하는 전형방법 수를 가급적 축소하여 운영 함.
 - 모집단위별 또는 전형별로 과도하게 전형방법을 달리 설정하여 전형방법 수가 확대되는 것을 지양함.
 - '동일한 전형' 내에서는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을 동일하게 설정할 것을 권장
- (전형유형 수 축소) 대입전형 간소화의 일환으로 대학별로 설정·활용하는 전형유형 수를 축소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
 - '수시 전형'은 4개 전형유형(학생부, 면접, 실기, 서류)
 - '정시 전형'은 2개 전형유형(학생부, 수능)
- (성적반영방법 간소화) 대입전형 간소화의 일환으로 복잡한 성적반영방법을 표준화 및 유형화 운영
 - '학생부 및 수능' 반영방법의 표준화 및 유형화 추진
 - ※ 세부계획은 향후 국정과제 및 교육부 기본방향 확정후 정책연구추진 예정

【전형방법 간소화 예시】



라. 수시 입학전형의 수능반영 지양 권고

- 수시모집 입학전형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최저학력기준으로 설정 · 반영하는 방법을 최대한 지양
 - 전공 특성에 따라 학업성취수준 등 최저학력기준이 필요한 경우 수시에서는 학생부 성적을 활용
 - 단, 필요에 따라 부득이 수능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등급으로만 활용 원칙

☞ ‘최저학력기준’과 관련한 실시현황 분석 및 타당성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 및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각 대학에서도 수험생의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함.

※ 향후 협의회가 최저학력기준과 관련한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한 경우 각 대학은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 함.

마. 학생부 종합전형

-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 교과를 비롯하여 전공 특성에 맞는 다양한 비교과 전형자료(비교과기록상황, 자기소개서, 학업계획서, 추천서 등)기준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, 자기계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“학생부 종합” 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.

가. 학생모집

□ 모집대상
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□ 모집시기 구분

고등교육법 시행령
제41조

- 모집시기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하며, 분할모집은 수시모집은 2회(차)로 하고, 정시모집은 분할 없이 한차례 실시
 - 정시모집 접수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한 추가접수 및 충원은 대학이 자율로 실시 할 수 있음
- 모집기간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이후에는 그 기간을 준수 함.
- 수시모집에서 미 충원된 인원을 정시모집에 포함하여 모집 가능

□ 모집인원

- 입학정원에 다음 사항을 감하여 결정
 - 모집인원 유동제에 따라 전전학년도에 초과모집 한 인원
 - 행정제재 등으로 모집정지 또는 감축된 인원
- 모집인원 유동제
 - 합격자 사정 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대학별 자체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거 처리하되 최종적으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당초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과모집 가능
 - ▶ 초과모집 인원은 차차학년도 감축모집
 - ▶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초과선발 지양함.
 - ▶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, 모집인원 유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

□ 모집방법

-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

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 후 공개 모집함.

고등교육법 시행령
제42조

나. 전문대학 지원방법

□ 지원방법

- 전문대학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시모집, 정시모집, 추가모집에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음.

□ 복수지원 허용범위

-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(교육대학, 산업대학 포함)간의 복수지원 가능
 - ※ 해당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(각 대학 내 복수지원 허용여부를 모집요강에 안내 함)

□ 복수지원 금지

- 수시모집 대학(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포함)에 합격한 자(충원합격자 포함)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“정시모집 및 추가모집”에 지원 금지
-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(교육대학, 산업대학 포함)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, 대학(교육대학, 산업대학 포함)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.
- 전문대학은 복수지원 허용 범위와 위반자에 대한 입학무효 등을 모집요강 및 입학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여 지원자가 사전 인지하도록 조치함.
 - 원서접수 시 관련 사항 점검, 온라인 원서접수 시 수험생의 이전 지원현황, 합격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, 규정에 위반될 경우, 원서접수 처리 불가 등

다. 합격자 발표

- 모집시기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합격자를 발표함.
 - 대학은 지원자들이 합격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발표해야 함

- 지원자 전원 또는 예비합격 후보자의 순위명단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일괄 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되, 등록개시 전일까지는 대상자에게 통보 또는 열람을 권장함.
-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일괄 발표 또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할 경우, 그 사유를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함.
- 수시모집 지원자 중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발표 시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안내 후 합격자로 발표
- 충원 대상이 되는 예비 합격 후보자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(예 : 전화녹취 등)를 확보하도록 함.
- 충원합격 통보를 일방적으로 고지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,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의 처리방침을 모집요강에 명시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함.
-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자(충원합격자 포함)를 발표할 시, 수험생은 반드시 합격여부를 조회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모집요강 상에 안내
- 합격자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(일정, 고지, 방법, 유의사항 등)은 모집요강에 안내할 것

라. 신입생 등록

고등교육법 시행령
제42조

□ 이중등록 금지

-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(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 포함)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.

□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

-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 등록 처리하며,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함(예치금 가 등록을 정식등록으로 처리함)
- 등록이라 함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.
- 수시모집의 등록은 문서등록을 원칙으로 하며, 대학 「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과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 납부금액의 10%이내에 해당하는

‘등록확인예치금’ 징수 가능

- 등록기간 전에 사전 예비 등록을 받는 것은 금지함.
-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,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으로 함.

□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

- 정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 내 또는 대학별로 설정한 등록기간 내 등록 처리 하며, 정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함.
-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,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으로 함.

□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

- 복수지원이 허용되는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의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처리

□ 미등록 충원

- 모집시기별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선발 가능함. (전형기간 중 등록금 환불자 포함)
- 예비합격자의 충원은 지원자 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 사정 시 미리 확정하여 둔 예비합격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
- 미등록자 충원과정에서 대학 또는 금융기관의 과실사고로 인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

마. 대입지원방법위반자에 대한 조치

고등교육법 시행령
제42조의2

□ 복수지원위반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

-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·합격·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함.
- 전문대학 및 대학(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)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·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.

※ [참고] :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

- ▶ 육·해·공군사관학교, 경찰대학, 과학기술원(한국,광주,대구경북,울산), 한국폴리텍대학, 한국방송통신대학교, 한국예술종합학교, 한국전통문화대학교, 한국농수산대학 등 고등교육법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·각종학교

5 전문대학 입학전형 표준 등

가. 전형체제 표준

- 수험생 및 학부모가 전형내용을 쉽게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표준화된 전형체제를 구축
- 대학은 표준화된 전형체제에 따라 항목 등을 통일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의 이해를 도모함.

【전형체제 표준】

| 단계(구분) | A | B | C | D | E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단계별 항목 | 모집시기 | 전형구분 | 전형유형 | 전형명 | 전형방법 |
| 세부내용 |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| 일반전형 정원내 특별전형 정원의외 특별전형 | 학생부 위주 수능 위주 면접 위주 | 전문(직업)과정 졸업자 사회·지역 배려자 관련 경력자 | 학생부60%+면접40% 면접80%+학생부20% 실기70%+서류30% |

【용어의 정의 및 적용기준】

| 용어 | 정의 |
|--------|--|
| 모집시기 | ▶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2조(입학지원방법 등)에 따른 “수시모집”, “정시모집” 을 말함. |
| 전형구분 | ▶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4조(입학전형의 구분)에 따라 “일반전형” 과 “정원내/외 특별전형” 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함. |
| 전형유형 | ▶ 주된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한 전형의 유형으로서 수능 위주, 학생부(교과/종합) 위주, 면접 위주, 실기 위주, 서류 위주, 비교과 전형 을 말함. * 학생부 교과 위주는 교과 성적 위주의 평가이며, 학생부 종합 위주는 입학사정관 또는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 하여 교과를 비롯하여 자기소개서 및 면접 등의 요소와 병행,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의미 |
| 전형명 | ▶ 각 전형에서 요구하는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요건 등을 명칭화 한 것을 말함. * 정원내 특별전형 전형명(사용예) : “대학 자체기준 전형”, “일반과정 졸업자 전형”, “전문(직업)과정 졸업자 전형”, “주전자 전형”, “특기자 전형”, “관련경력자 전형”, “사회지역배려 대상자 전형” 등 |
| 지원자격 | ▶ 각 전형별로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대학이 정한 세부기준을 말함.(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말함) |
| 전형요소 | ▶ 학생선발 시 실제 반영하는 평가항목으로 수능, 학생부, 면접, 실기, 서류 등 5개 요소를 말함. |
| 전형방법 | ▶ 학생선발 시 실제 적용되는 전형요소 활용 및 평가방법(요소별 반영비율과 적용방법)을 말함. |
| 전형방법 수 | ▶ 학과별, 전형별로 적용하는 전형방법의 개수로서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“전형방법” 으로 계산함. (예 : 학생부 70% + 수능 30% vs 학생부 80% + 수능 20%는 다른 전형방법) |

나. 입학정보 표준화 및 용어정비 등

- 관심정보인 대학별 모집요강을 공통기준으로 통일하고 누구나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열람내용과 순서를 재구성 하는 등 표준화 추진
- 불필요한 항목사용을 자제하여 복잡함을 줄이고, 어렵지 않고 흔히 사용하는 일반화된 표현을 사용함과 동시에, 법률적 용어, 전문적 용어, 축약어 등의 사용은 자제 하여 학생·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추진

각 대학은 위와 같이 전문대학 입학전형 표준을 위하여 협의회가 관련 서식 및 예시 등을 포함한 “작성기준”을 통보한 경우, 각 대학은 모집요강 제작 및 활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.

Ⅲ.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일정

가. 공통사항

□ 모집횟수

- 공통적인 모집횟수는 수시모집은 2회(차)까지 운영, 정시모집의 경우 한차례만 실시

□ 접수기간

- 각 시기별 접수기간은 시작일과 마감일을 전문대학 모두 동일하게 실시

□ 자율모집

- 정시모집 접수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한 추가접수 및 충원은 대학이 자율로 실시 할 수 있음
- 정시모집 접수 종료 이후 결원이 발생할 시 입시 마감일인 2020.2.29.일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가능 함.

□ 마감등록

- 입학전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2020.2.29일에는 타 대학 미등록자에 한하여 합격 및 등록처리 함.

나.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일정

| 모집시기 | 접수기간 | 최초 합격자 | | 충원 합격자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| | 발표 | 등록 | 발표 | 등록 |
| 수시 | 1차 '19.9.6(금) ~ 9.27(금) | '19.12.9(월)까지 | '19.12.11(수) ~ 12.13(금) | '19.12.14(토) ~ 12.23(월) 까지 (합격자 발표 21시까지) | |
| | 2차 '19.11.6(수) ~ 11.20(수) | | | | |
| 정시 | '19.12.30(월) ~ '20.01.13(월) | '20.02.4(화)까지 | '20.02.6(목) ~ 02.10(월) | '20.02.11(화) ~ 02.29(토) 24시까지 | |

※ 2020.2.29(토)일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시 타 대학 등록자는 제외

※ 정시모집 접수 이후 결원이 발생할 시 입시 마감일인 2020.2.29.(토)일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



□ 시기별 전형기간

- 시기별 전형기간은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
- 수시모집에서 면접·실기 등의 고사 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나, 중간·기말고사 등 고등학교 학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

□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, 북한이탈주민 전형의 수시모집 기간

-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, 북한이탈주민 전형을 수시모집에 실시할 경우, 다음의 전형일정에 따라 실시함.
 - ▶ 원서접수 및 전형기간 : 2019. 7. 1일부터 12. 9일까지
 - ▶ 합격자 발표, 등록 : 상기 수시모집 일정과 동일
- 정시모집에서 실시할 경우, 상기 전형일정을 준수함.
 - ※ 순수외국인의 모집 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함(9월 입학 가능)

□ 기타 유의사항

- 2020.2.29일자 합격 및 등록 시, 각 대학은 수험생의 타 대학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타 대학 등록자는 제외 후 합격 및 등록 처리 함.(대입지원방법위반자 발생 시 발생할 분쟁을 대비해 수험생에 대한 전화 녹취 등 확보)
- 대학 간 원활하고 질서 있는 충원을 위해 “입학전형관리시스템”(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 [<http://apply.kcce.or.kr>] 등) 처리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며,

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2항을 위반(기본사항 미
준수)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제재 등 엄중 조치 예정

Ⅳ. 행정사항

가.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

□ 2020학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

- 제출기한 : 2018. 3월말까지 (별도안내)

- 각 대학은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사항을 협의회 입학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기한 내 제출 함.

□ 2020학년도 시행계획 공표(발표)

- 발표기한 : 2018. 4월말까지 고등교육법 34조의5 제2항

- 2020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「고등교육법」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에 따라 각 대학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함.

※ 시행계획에 대해 「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」의 조정권고 등 통보가 있을 시 대학은 이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발표 함.

□ 2020학년도 입학정보 제공

- 협의회는 대학별 시행계획 내용을 수합·통계하고 주요 입학정보에 대하여 언론기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홍보

□ 2020학년도 모집시기별 주요사항 제출

- 수시모집 주요사항 제출 기한 : 2019. 5월중순 경 (별도 안내)
- 정시모집 주요사항 제출 기한 : 2019. 10월중순 경 (별도 안내)

나. 지원·등록 현황 제출

- 수시모집 지원 및 등록 현황을 수시모집 종료 후 협의회로 제출 (별도 안내)
- 최종 지원 및 등록 현황을 당해 학년도 전형종료 후 협의회로 제출 (별도 안내)
- 지원방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 개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상세자료를 협의회에 제출

다. 지원방법 위반자 관련사항

-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2조의2에 의거,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 지원방법위반자 처리업무 수행
- 입학 지원방법 위반자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시모집 입학지원서에 수시모집 합격여부를 반드시 표시
 - 수험생 본인으로부터 반드시 확인절차를 밟고 그 근거를 보관
 - 수험생이 지원서에 합격여부를 의도적으로 허위 표시할 경우 입학 지원방법 위반자에 해당하여 추후 입학이 무효 됨.
 - 합격표시 된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도록 각 전문대학은 각별히 유의
 -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험생에게 재차 확인하여 지원방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
- 수험생은 입학 후라도 지원방법위반 및 입학부정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을 무효로 함.
 - 신입생 모집요강에 “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한다”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
- 전형일정을 위반하여 모집 금지(수시모집 기간 중 정시 원서접수 등)
- 입학 홍보 및 원서접수 과정에서 대학입학지원 방법을 잘못 안내하거나 지원자의 의사와 다르게 접수하여 입학전형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- 입학지원서 상에 지원방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
 - 복수지원 관련 위반사항을 모집요강 및 입학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고, 입학원서 접수과정에서 입학무효 조항을 확인하도록 함.
 - 수시모집에 합격 후 정시(추가)모집에 지원하지 않도록 아래 예시와 같이 모집요강 및 입학원서(인터넷포함) 등에 명기

■ 수시모집 합격여부 ■

본인은 지원방법위반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, 2020학년도 수시모집(대학, 교육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)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있다 / 없다

✓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(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)는 등록(예치금 납부)하지 않았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입학이 무효 됨을 알고 있음.

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지원자 확인 _____ (서명) | 접수자 확인 _____ (서명)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
※ 창구접수 시에는 지원자와의 대면으로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함.

- 이중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모집요강에 명기하도록 함.
 -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기간 내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.
- 각 전문대학은 모집시기별 합격자, 등록자 명단 등 대입지원위반자 검색을 위한 자료를 요청기간에 맞춰 신속히 제공하여 대입지원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.

라. 등록금 환불 관련사항

-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절차를 모집요강에 명기하여 지원자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.
- 등록포기(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포기를 표시한 경우) 등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하여 처리함.

마. 입학전형료

- 입학전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하고 사회·지역배려 대상자 등에게는 부담 완화 등 고려
- 전 학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·지출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, 전형료를 적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·시행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

- 전형료 수입·지출 및 환불에 관한 고등교육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동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여 명확히 처리함.
 - 전형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「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·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(교육부령)」을 준수하고,
 - 전형료의 면제·감액·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4(입학전형료)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42조의3(입학전형료) 규정을 준수하여 명확히 처리함.
-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·결산 내용 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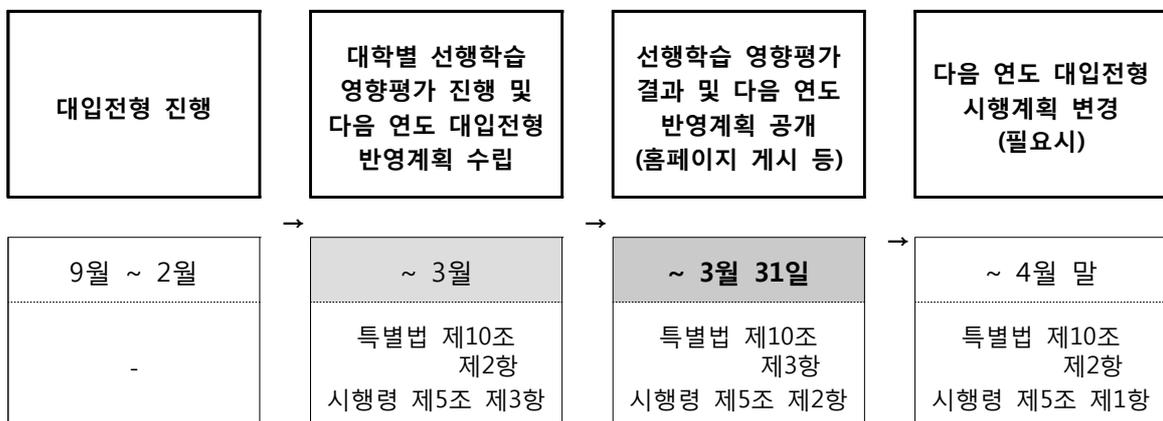
바. 사전 예고제 강화

-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5에 따라 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을 앞당겨 공표하는 등 입학정보의 사전예고제 강화
 - 각 대학은 「고등교육법」에서 규정한 사전 안내 기한을 준수 함.

| 구분 | 입학전형 기본사항 (협의회) | 입학전형 시행계획 (대 학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발표시기 | 고 1, 8월말까지 (2년 6개월 전) | 고 2, 4월말까지 (1년 10개월 전) |

사. 선행학습 영향평가

- 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」 및 「같은법 시행령 제5조」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, 선행학습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
-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



-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정사항(범위 및 절차, 업무처리 간소화 방법 등)은 향후 개정법령과 연계하여 협의회가 별도 안내

아. 기 타

- 입학전형 관련 서류(DB 서류 포함 등)는 최소 4년 보관
 - 단,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.
 - ※ 개인정보유출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시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철저

□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법령 준수

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1조~12조 및 제60조 등

- 대입전형 학생의 개인정보가 보유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(5일 이내)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. 단, 『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』 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
-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, 파기 절차 등은 『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』 등 관련 규정을 참고
 - ※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령을 준용 함.
- 대학은 입시대가를 목적으로 지역 및 일선 고등학교 관계자에게 국내외 연수, 금품 및 향응 접대, 상품권 등의 제공을 하지 않으며, 이를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관리하도록 함.
- 대학은 학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과제도를 운영·관리하되, 신입생 충원을 위한 편법적인 전과제도를 금지함.

붙임 1

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현황 (2017년 8월 기준)

| 지역 | 대학명 | 지역 | 대학명 | 지역 | 대학명 | 지역 | 대학명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서울 | 동양미래대 | 경기 | 청강문화산업대 | 경북 | 서라벌대 | 전남 | 동아보건대 | | | |
| | 명지전문대 | | 한국관광대 | | 선린대 | | 목포과학대 | | | |
| | 배화여자대 | | 한국복지대 | | 성덕대 | | 순천제일대 | | | |
| | 삼육보건대 | 경남정보대 | 안동과학대 | | 전남과학대 | | | | | |
| | 서울여자간호대 | 대동대 | 영남외국어대 | | 전남도립대 | | | | | |
| | 서일대 | 동부산대 | 포항대 | 청암대 | | | | | | |
| | 송의여자대 | 동의과학대 | 호산대 | 한영대 | | | | | | |
| | 인덕대 | 부산 | 동주대 | 대전 | 대덕대 | | 군산간호대 | | | |
| | 한양여자대 | | 부산경상대 | | 대전과학기술대 | | 군장대 | | | |
| 인천 | 경인여자대 | 부산과학기술대 | 대전보건대 | | 전북 | 백제예술대 | | | | |
| | 인천재능대 | 부산여자대 | 우송정보대 | 서해대 | | | | | | |
| | 인하공업전문대 | 부산예술대 | 한국영상대 | 원광보건대 | | | | | | |
| 경기 | 경기과학기술대 | 울산 | 울산과학대 | 세종 | | 한국영상대 | 전북 | 전북과학대 | | |
| | 경민대 | | 춘해보건대 | | | 백석문화대 | | 전주기전대 | | |
| | 경북대 | 경남 | 거제대 | | | 충남 | | 신성대 | 전주비전대 | |
| | 계원예술대 | | 경남도립거창대 | | | | | 아주자동차대 | 제주 | 제주관광대 |
| | 국제대 | | 경남도립남해대 | | | | | 연암대 | | 충남도립대 |
| | 김포대 | | 김해대 | 해전대 | | | | * 파란색 대학은 국공립대학임. | | |
| | 농협대 | 경남 | 동원과학기술대 | 충북 | 강동대 | | | | | |
| | 대림대 | | 마산대 | | 대원대 | | | | | |
| | 동남보건대 | | 연암공과대 | | 충북도립대 | | | | | |
| | 동서울대 | | 진주보건대 | | 충북보건과학대 | | | | | |
| | 동아방송예술대 | | 창원문성대 | | 충청대 | | | | | |
| | 동원대 | 한국승강기대 | 강원 | 강릉영동대 | | | | | | |
| | 두원공과대 | 계명문화대 | | 강원관광대 | | | | | | |
| | 부천대 | 대구공업대 | | 강원도립대 | | | | | | |
| | 서울예술대 | 대구과학대 | | 상지영서대 | | | | | | |
| 서정대 | 대구 | 대구보건대 | | 세경대 | | | | | | |
| 수원과학대 | | 수성대 | 송곡대 | | | | | | | |
| 수원여자대 | | 영남이공대 | 송호대 | | | | | | | |
| 신구대 | 영진전문대 | 광주 | 한국골프대 | | | | | | | |
| 신안산대 | 가톨릭상지대 | | 한림성심대 | | | | | | | |
| 안산대 | 경북과학대 | | 광주보건대 | | | | | | | |
| 여주대 | 경북도립대 | | 기독교간호대 | | | | | | | |
| 연성대 | 경북보건대 | | 동강대 | | | | | | | |
| 오산대 | 경북전문대 | 서영대 | | | | | | | | |
| 용인송담대 | 구미대 | 전남 | 조선간호대 | | | | | | | |
| 웅지세무대 | 대경대 | | 조선이공대 | | | | | | | |
| 유한대 | 대구미래대 | | 고구려대 | | | | | | | |
| 장안대 | 문경대 | | 광양보건대 | | | | | | | |

붙임 2

2020학년도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전형 일정

| 구분 | | 일반대학 | 전문대학 | |
|----------|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1차 | 2차 |
| 수시 모집 | 원서접수 | ○ 2019. 9. 6.(금) ~ 10.(화) 중 3일 이상 | 2019.9.6.(금)~ 9.27(금) (22일) ※ 재외국민 및 외국인 : 2019.7.1.(수) ~ | 2019.11.6.(수)~ 11.20(수) (15일) |
| | 전형기간 | ○ 2019. 9. 11.(수) ~ 12. 9.(월)(90일) | 2019.9.28.(토)부터 ~ 최초 합격자 발표 전까지 자율 | |
| | 합격자 발표 | ○ 2019. 12. 10.(화)까지 | 2019.12.9.(월)까지 | |
| | 합격자 등록 | ○ 2019. 12. 11.(수) ~ 13.(금)(3일) | 2019.12.11.(수)~12.13(금) (3일) | |
| | 총원합격자 발표 | ○ 2019. 12. 19.(목) (합격자 발표 21시 까지) | 2019.12.14.(토)~12.23(월) 까지 (합격자 발표 21시 까지) | |
| | 총원합격자 등록 | ○ 2019. 12. 20.(금) | | |
| 정시 모집 | 원서접수 | ○ 2019. 12. 26.(목) ~ 31.(화) 중 3일 이상 | 2019.12.30.(월)~2020.1.13(월) (15일) | |
| | 전형기간 | ○ 가군 : 2020. 1. 2.(목) ~ 10.(금)(9일) ○ 나군 : 2020. 1. 11.(토) ~ 19.(일)(9일) ○ 다군 : 2020. 1. 20.(월) ~ 30.(목)(11일) | 2020.1.14.(화)부터~최초 발표 전까지 자율 | |
| | 합격자 발표 | ○ 2020. 2. 4.(화)까지 | 2020.2.4.(화) 까지 | |
| | 합격자 등록 | ○ 2020. 2. 5.(수) ~ 7.(금)(3일) | 2020.2.6.(목)~ 2.10(월) (5일) | |
| | 총원합격자 발표 | ○ 2020. 2. 17.(월) (합격자 발표 21시 까지) | 2020.2.11.(화)~ 2.29(토) 까지 | |
| | 총원합격자 등록 | ○ 2020. 2. 18.(화) | | |
| 추가 모집 | 원서접수 | ○ 원서 접수/전형/합격자 발표 2020. 2.20(목) ~ 27(목) 21시까지 | ※ 2020.2.29일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시 타 대학 등록자는 제외 | |
| | 전형일 | | ※ 정시모집 접수 이후 결원이 발생할 시 입시 마감일인 2020.2.29.(토)까지 대학 이 자율적으로 운영 | |
| | 합격자발표 | | | |
| | 등록기간 | ○ 2020. 2. 28(금) | | |

붙임 3 정원 외 특별전형 참고자료

▣ 농어촌 특별전형 기준

□ 자격기준

☞ 법령상 지원자격

-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·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의 학생

-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소재지·재학기간·학생 거주지·거주기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「입학전형관리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함
-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,
 - ①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 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(유형 I)과,
 - ②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·중·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(유형 II)로 구분됨
-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

□ 제출 서류 보완 및 검증 내실화

○ 제출 서류 보완 및 의무화

- 지원자격 확인서, 농어촌 학교 재학사실 확인서, 중·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
-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(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)
- 가족관계증명서(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, 지원자 본인의 기본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)
 - ※ 위의 서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(또는 모)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
- 이 밖에도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○ 검증 내실화

- 서류 검증을 내실화하고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재확인 및 추가 서류 검토 등을 통해 놓여준 특별전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

-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 전후로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
-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가 놓여준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, 부모의 직장 소재지가 도시 지역인 경우(출, 퇴근 가능 여부 등 점검)
- 학생의 형제나 자매가 학생과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등

□ 놓여준 지역 설정

-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지역 및 도서·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,
 - 농가인구비율, 인구규모, 도시화의 진행 수준, 대도시로의 접근성 등 교육 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교육 여건이 미비한 지역의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유의
 - ▶ 단, 대학의 판단에 따라 지원 자격에 반영하지 않고, 선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을 통하여 '교육환경'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
 - ▶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'읍·면'지역에서 '시'지역으로 개편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개편 대상지역의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놓여준 지역 설정

〈예 시〉

- * 고등학교(중학교, 초등학교)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·면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(중학교, 초등학교)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으로 인정

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기준

□ 자격기준

☞ 법령상 지원자격

-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·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
라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- 2014학년도부터 '우선돌봄 차상위가구'(현재,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 인

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% 이하인 비수급계층)에 대해서도 특별전형 지원 자격 인정

- 지원자 제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편법·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 - ※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 동등 학력자를 지원자격 상에서 제한할 수 없음
 - ※ 관련 법령의 제·개정이 있는 경우 대상 기준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▣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기준

□ 자격기준

☞ 법령상 지원자격

-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·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
라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(법 제2조 제1호·제2호·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
- 1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 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·도 교육감이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
- 2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
- 3)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
- 4)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
□ 운영기준 및 방법

-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모집 단위 신설이 원칙이나, 기존 학과에 별도·혼합반 편성 및 운영 가능함. 다만, 산업체 근로자가 일-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및 수업 방식 등을 재직자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특별 프로그램(야간·주말과정, 사이버 과정 등)을 개발·운영 할 것(보건·의료 및 교원 양성 관련 학과 제외)
- 군 의무복무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

▣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기준

□ 자격기준

☞ 법령상 지원자격

-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(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)
-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
-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
 - 가. 재외국민
 - 나. 외국인
 - 다. 「국적법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

☞ 법령상의 지원자격 구분(예)

| 모집 인원 | 법령 구분 | 세부 지원자격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입학정원 2% 이내 모집 |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2호 | 해외근무 또는 사업/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|
|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|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|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|

-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급별 수학 결손 정도(외국학교 재학기간)등을 고려하여, 자격 기준을 「입학전형관리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집 요강에 명시함
 - 해외 학교 재학 기간, 자격 인정 기준 시점, 자격 기간 계산 기준, 지원 자격 인정 유효 기간,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, 제3국 수학 인정 범위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 설정

재학기간을 설정할 때, 외국인 학제 등을 고려하여 년도가 아닌 학기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권장(예 : 중고과정 연속 2~3년 이상,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4~6학기 이상,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~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)

- 부정·편법·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
 - 부모·학생의 외국 거주 적법성 및 직업의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부모의 직업과 거주 기간 등을 자격 기준으로 부가 설정하고, 모집 요강에 기재된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강화
 - 대상자 간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격 기준을 설정함
- 부모의 해외 근무 기간 허위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통한 출입국 사실증명서 검증 및 부모의 재직 기관에 해외 근무 기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권장함
 - 대학 간 제출 서류의 위·변조 적발 사례 공유 등 상시 검증 체제를 구축하여 입학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위·변조 등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
- 지원자격 편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 상실·취득 내용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
- 지원자격 심사 관련 안내사항
 - 동일 학년(학기)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
 - 검정고시, 홈스쿨링,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미인정함
 - 기타의 경우는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판단함
 - 자격 기준에 대한 판단은 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되, 안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대학별 '입학전형관리위원회' 심의를 거쳐 판단 권장함
- 전교육과정 이수자(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7호) 지원자격 심사 관련 안내사항
 - 해외 1개국 내에서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·중·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
 -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·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권장함
 -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,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권장함
 -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,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을 권장함

-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

| 학년제 |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| 비고 |
|---------|---|--|
| 10학년 이하 | 미인정 | 단,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*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|
| 11학년제 | 초·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| |
| 12학년제 | • 단,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·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| |
| 13학년 이상 | 10학년~12학년 또는 11학년~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| |

*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: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

- 단,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·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·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(6개월)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
-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(전·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)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·중·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함

□ 전형 일정

-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 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해외 주재 한국학교들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전형을 7~8월 중에 진행할 것을 권장함

□ 전형 방법

- 전형 방법은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함
- '업무처리요령'을 작성·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, 해외 근무 및 재학 기간 등 자격 요건과 전형 방법 변경 시 경과조치 및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함

□ 모집 인원

-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·외국인·결혼이주민 및 부와 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, 북한이탈주민의 모집 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함
-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2호 '재외국민 및 외국인'은 [별표1]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야 하며, 이를 정원 제한 없이 선발하여서는 안 됨(감사원 지적 사례)

□ **지원자 제출 서류 참고**

| 제출서류(재외국민 2% 이내 기준) |
|--|
| 1.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2. 초등학교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(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) 3. 중학교/고등학교 재학증명서 4. 중학교/고등학교 성적증명서 5. 학생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6. 출입국사실증명서(부모, 학생) 7.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(부모, 학생) 8. 여권 사본(부모, 학생) 9.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(부모, 학생) 10. 재직증명서(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취업자 제출) 11.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(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) 12.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(현지 취업자 제출) 13. 해외 세금납부증명서(현지 자영업자 제출) |

※ 대학별 추가 서류는 대학자율로 결정

□ **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공통 지원자격**

-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(정원의 2% 선발) 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함
-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,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/4 이상, 부모의 경우 2/3 이상으로 설정
- 다만, 지원자격 변경에 따른 학생·부모의 신뢰보호 및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20학년도까지는 대학 자율로 시행하되, 공통 지원자격은 202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

| 구분 | 2020학년도 까지 | 2021학년도 이후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학생 이수 기간 |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시행 | ⇒ 고교 1년 포함 중·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|
| 체류 기간 | 대학 자율 설정 | ⇒ - 학생 : 학생 이수 기간의 3/4 이상 - 부모 : 학생 이수 기간의 2/3 이상 |

- 2021학년도부터 변경됨을 모집요강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

▣ **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기준**

□ **자격기준**

☞ 법령상 지원자격

-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
- 단, 수험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대학 내 「입학전형관리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하며, 특정 학과나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, 장애인 특별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(장애의 정도, 교육환경 등 고려) 등을 도입하여 중증 장애 학생 등이 선발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함
- 기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(국가보훈처 등록)도 대상자로 정함

※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 동등 학력자를 지원자격 상에서 제한할 수 없음